

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안내문

■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.

-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도입위탁수수료, 취업교육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- 한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있어 한국어 능력, 한국문화의 이해 정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.

■ 신규 외국인력으로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고용허가 발급 전까지 사업장 변경자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
* 고용허가 신청 화면에서 모집외국인 구분을 '사업장변경' 으로 선택

※ 문의사항은 관할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